

제 2회 협동조합 월례 열린 세미나 결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과 올바른 제정 방향

주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후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일시: 4월 30일(수) 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수원, 박주희 팀장

프로그램:

발표1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발표2 :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방향과 주요내용

–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회 :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

토론자 : 조완형 (한살림연합전무이사)

남궁청완(경동신협 이사장, 신협중앙회 이사)

최봉섭(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최영미(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우령각시 대표)

엄재영(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 전무이사)

참가자 전체토론

○ 인사말

정재돈: 제1회 열린세미나때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진입방안에 대해 다뤘고, 이번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본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발의가 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태 소장이 전반적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께서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이다. 많은 분이 참석해줘서 감사하다.

임정빈: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석해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다시금 사회적경제가 화두다. 사람이 중심이 된 경제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만,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조직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는 적절한 것 같다. 모인 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 토론이 한번에 마치고에는 중대하기에, 바른 방향으로 제정될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깊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 발제1

유영우: 각 사회적경제 분야별 토론자를 섭외했다. 신협, 의료생협 등 각 영역에서 오셨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발제자는 20분씩, 토론자는 7분 이내로 요약해서 얘기

해주시기 바란다. 잘 아시다시피 4월 10일날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표출되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갖는 목적과 취지, 이 법의 다양한 문제 및 본질적인 문제를 모두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각자가 속한 조직의 입장 및 그 외에 기본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해보면 좋겠다.

김기태: 우리나라는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진지 2년 만에 이를 덮어 씌우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되는걸 보면 제도적 측면에서 감회가 새롭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시 강의 등을 하면 사회적경제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부분도 있었다. 올해 초 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양당 대표가 사회적경제 모두 육성하겠다고 나오고, 어느 순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신용을 얻었다 생각한다. 이제는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다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자료가 조금 많아졌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에서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본주의가 반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회적경제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드는데 목적은 크게 보면 사회적경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과 포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정체성 규정은 대부분은 규범적인 규정과 제도적인 규정이 있다. 규범적인 규정은 다시 사회적경제조직의 목적, 운영원리, 이윤의 분배 방식 등으로 되어 있다. 각 나라의 특징과 각 나라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가치나 운영원리에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대부분 녹아들어가 있다. 평등, 연대, 민주, 공정 등. 이윤 분배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대부분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규범적 정의는 가치, 원칙들이어서 개별 조직들이 지키고 있는지 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제도적인 규정에 따라 그 나라의 기본적 제도를 열거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대부분 협동조합이란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다.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들어가면, 사회적경제 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다. 충남 발전계획에서의 사회적경제와 강원도 발전계획에서의 사회적경제가 또 다르다. 공통점만을 뽑아보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부조직이 아닌 사업조직들의 경제활동”이란 무난한 정의를 만들 수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법안을 보면,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 협동조합들이 과연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범적 정의를 지키고 있는가란 문제가 제기된다. 또 기존협동조합들은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란 문제가 제기된다. 규범적 정의를 지키는 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란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등록제를 법에 도입하는 방식도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되느냐는 각 조직의 지도자의 의지가 강한 변수가 된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법제도 전체 체계와 병립할 수 있는가란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여건을 고려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와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호활성화'라는 법적 목적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된다. 따라서 신흥이나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구성원 특히 지도자그룹의 의지, 가치와 원칙을 구현한 운영방식, 성과적인 시스템 개발이란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87년 체제가 도입되면서 네덜란드 유형과 시장중심의 유형의 경쟁 속에서 여전히 모색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책 예산 등을 관료조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얻으려는 움직임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재량예산이 강하기에 운동조직도 그 속에서 얻어가려고 하면서 국지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국기법, 자활, 사회적경제의 모든 논의가 그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를 만든 순간 정부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게 무서워서 제도 논의를 안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검토를 해야한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국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비슷한 법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사회적경제 공약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조례도 이미 27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육성계획도 이미 4군데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제도화와 국가차원의 제도화의 시차가 넓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가차원의 통합제도가 없으면 현장의 자치단체의 제도화도 제약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섭과 같은 형태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먼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의 부여를 통한 연대체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양당의 법안에 이종연합회 등이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협의회를 만들 때 난립할 수 있으니, 전체 가입회사 또는 단체의 최소 25%를 대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대국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통합적 조율 등을 들 수 있다. 주무부처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김현미 의원실에서 자세히 얘기될 듯 하다. 또 금융 및 공공책임조달 등 신규 지원정책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의 기본법이 민간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고무줄을 당겨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농협법 신경분리 얘기를 할 때, 농림부에서 7년 안에 분리한다고 하다가, 농민이 3년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법 자체가 7년 뒤에 통과되어, 6년 뒤 시행되었다. 따라서 제도는 적정한 협상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단계별 이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조문화가 가능한 구체적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산적인 논의가 잘 안되는 게 원칙만 얘기되고 논의가 진행이 안되는 게 많다. 책임있는 논의에서는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제도정비 관련 각 주체들의 여건에 대한 상호 양해가 필요하다. 농협 들어온 것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논의에서 신흥이 빠진 경우도 많다.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10월말까지 법제정 안 되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정치권도 민간진영과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현장의 조직들을 입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잘 해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백현석: 김현미 의원 보좌관이다. 김현미 의원이 6.4 비례대표 공천 심사위원장인데, 급히 회의가 잡혀 참석하지 못함 양해 바란다. 작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하면서 조세 감면 조항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안에 조세 감면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들어가 있다.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도 들어가 있어 환영했다. 김기태 소장님이 원칙, 필요성, 방향에 대해 잘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법안을 중심으로 발제하도록 하겠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정방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발의를 하겠다는 원칙이다.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인 사회적경제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본 발제는 김현미 의원의 안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새누리당 법안은 행정위주의 기능적인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쪽으로 적시를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제2조 정의에도 좀 더 분명하게 명시했다. 또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추진기관 등을 추가했다. 새누리당안에서도 광역자활센터 삭제하고, 중앙자활 2년 유예 등으로 변경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안이 관치 위원회 가능성이 높기에, 전국단위의 협의회 대표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조 협의 및 조정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및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 노력을 명시했다. 제14조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제17조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에도 사회적금융으로 수정하고, 사회적금융제도의 구체화, 실질화를 했다. 제18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서 지난 새누리당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활기금을 제외했다. 또 정부예산 출연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적금융원의 설립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제2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서 자활과 마을기업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했다. 제25조의 교육훈련 지원만 있는데, 인식의 확산 부분을 포함했다.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 평생교육에서도 인식 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추진기관의 운영공개 별도조항을 신설했다. 부칙 제5조의 자활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자활은 경제 논리가 아닌 복지 논리에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이 타당해서 삭제했다. 새누리당은 자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중앙자활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제시한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열거를 했고, 집행기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려고 한다. 기획재정부 안에 협동조합 과가 2개 있는데,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하려고 한다. 원래 새누리당 초안과 같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사회적경제원으로 전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한다. 왜 대통령 직속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 산하일 수도 있는데 기재부냐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위원회는 집행보다 조정의 역할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부처 안행부, 보건복지부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된 부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적임이라 생각했다. 많은 분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기

재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논리가 아닌 대안경제 논리로 정책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발의하려 하는 것 같다. 날짜까지 잡지는 않았지만. 새정치경우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고, 법안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주무부처를 기재부로 했기에,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것이다. 법사위를 거쳐 자구 수정이 되겠지만, 이 법이 앞에서 얘기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에 다른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란을 최소화하려 한다. 새누리가 법안을 내세웠을 때 제2의 경제민주화 아니나란 논란이 많았는데, 한 번의 지방선거 이벤트가 아니라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로 하려고 한다. 법안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토론

유영우: 기존 새누리당 안에서 많이 수정보완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회적경제 조직과 개별법 협동조합 등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 법안 만들면서 사전에 협의한 것도 아니고, 법의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론화하고 논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협동조합 원칙에도 나온 민주적 운영원리인데, 국가의 중요한 법안을 그런 방식으로 제정해 가는 게 우려되는 측면도 많고, 당혹스럽다. 법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심도 깊게 얘기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사회적경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얘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간이 많이 남아 휴식 없이 진행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최봉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필요한 시기이나 당사자조직과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경제진영의 주체적 역량이 미숙한 상황에서 정부중심의 정책적 제도화 과정은 사회적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각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좀 더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공유되어 사회적경제진영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논의기구를 포함하여 실질적 운영에의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력한 자본과 시스템을 가진 곳과의 연대는 자칫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아직 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주년 행사를 했는데, 협동조합으로서 모범적이다, 원칙적이다란 찬사 이면에 시장성, 보편화가 가능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의료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금융 및 공공책임조달 등 신규 지원정책의 도입 필요에는 공감하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조달 혹은 내부 거래 등의 틀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반영한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협동과 연대이다. 개별법을 뛰어 넘는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한 연합회, 협의체 구성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역에 확실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통합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기재부가 아닌 별도의 외청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가치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과

발전이다. 특히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돌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및 기관의 적극적인 우선위탁이 필요하다.

최영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공론을 취합 중이므로 개인의견을 전제로 한다.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경제조직과 NGO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견을 얘기한다. 너무 빠르다란 의견이 먼저다. 연대회의에서 한 달 전에 외국 법안을 봤는데, 백 페이지가 넘는다. 중앙의 정책위원장으로 있는데도 쫓아갈 수 없는데, 현장은 따라갈 수 있을까? 지역의 일꾼은 누가 알 수 있을까? 법이 먼저 되면서 환경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독재개발시대와 다르지 않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은 밑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 너무 빠르다는 건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민간 사회적진영이 미성숙해 있고, 최근 참가에서 보듯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민간의 역량, 관료화되지 않은 전달시스템이란 대안 없이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대부분 기본법 얘기하면서 필요하지만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법을 충분히 논의할 만큼 민간이 성숙하지 않고, 대정부 파트너가 없다.

외국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봐야한다. 스페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민 총생산의 1/4이 없어졌다고 하는 나라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제 각각 다른 법규에 있기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게 크다. 캐나다는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겠다, 사회적경제기업이 행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프랑스는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나누면서도 우대조건의 범주를 정하겠다,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조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다. 기업양도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새정치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조직 공통의 법적토대, 정부의 지원활동에 대한 방침과 체계는 명확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개별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굉장히 다양하다. 뭐가 왜 안 풀리는가를 정리해야할 때라고 본다. 각각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의 공통의 우대규정이나 투명성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법과 부딪히는 조항도 경제정책의 수립과정과 지방정부 및 지역정책과의 관계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본다. 사회적경제 주류화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략수립이 논의되어야 한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의 경우처럼 불안정, 하도급, 신용불량의 문제 등에 대한 전략수립이 없다. 취약계층 내지 사회문제에 대한 전략수립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법안은 총괄부처 등이 있지만 이걸 지금 법안 말고도 가능하다. 국민의식도 기본법 외로 가능하다. 오히려 이 경우 지원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지금 시기는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략수립을 하고, 이 위원회가 수평적인 구조로, 지방에서 중앙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하면 좋겠다.

새누리도 곧 발의되고, 새정치도 할 예정이니, 현실적인 전략상 병합심리를 붙인 다음에, 단서 조항에 2~3년 기간을 두자. 붙은 다음에 시행하지 않고, 2~3년 동안 내용을 준비해가자. 법안은 최소화시키자란 방법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 상임위 통과 못 시키도록 한다. 민간진영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한다고 본다.

남궁청완: 오늘 중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당혹스럽다. 급하다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신탁 얘기가 많이 나온다. 신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에 감사하다.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얘기할 것으로 봐서, 신탁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다. 법안에 신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당혹스럽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동과 연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신규협동조합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초기의 사업투자비용과 운영과정에서 투입되는 자금이어서 기재부를 통하여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 출자, 투자, 기금과 관련된 법규 개정을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만 명시되어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 정비 등이 있어 환영하다. 다만 신탁을 제외한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협동조합들의 역할은 불분명해보여서 답변이 필요하다. 또한 신탁이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출자/투자/기금조성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신탁의 공동유대를 벗어난 경우의 가입에 대한 제도적 정비, 준조합원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적금융의 개념정리 및 역할을 규정하는 제도정비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완형: 생협이 전체 의견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한 생각이 든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의성은 불확실하다. 사회적경제 범주를 크게 설정하지만, 내용은 또 그렇지 않다. 기본법의 기본사항, 예를 들어 설립, 지도,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본법 보다 지원법으로 이해된다. 사회적경제지원·육성법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촉진법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목적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상조, 자립·자치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금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살림이나 생협에서는 사회적금융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크라우드펀딩 개발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화하지 않아도 서로 수익성만 확보되면 바로 만들어진다. 이런 건 잘 모르고 넣어둔 게 아닐까 싶다. 사회적금융원도 사회적금융기관을 설립·운영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사회적경제원과 사회적금융은 사업 중복과 업무혼란이 우려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도 포함하는 게 정부의 시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선발사회적경제조직이 후발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자생하기 매우 어렵다.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별도 설립·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선발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촉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연합회라면 모를까 협의회를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 없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에 맡겨도 문제없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온라인 경영고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협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총괄부서가 제대로 된 안테나가 될 수 있을까 싶다. 각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한 정부부처와 관계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타 부처 간의 협의,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유영우: 기본법은 상위법으로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기본법의 명문화된 것을 하위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인데, 협동조합기본법도 기본법으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개별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많이 고민해야할 듯 하다.

엄재영: 조문화가 가능한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얘기할 내용이 그쪽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연구자, 지원조직과 현장에 있는 사람과의 체감 거리가 있었다. 중복된 내용은 빠고,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처럼 되는데, 현장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도 과연 뜨거운 감자일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광역,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여러 조례가 만들어져 왔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실제 작동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긴 어렵다. 우선구매는 여러 법, 조례 등에 다 들어가 있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지원조례에도 들어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 왜 이걸 체감하지 못할까? 우선구매는 공공조달 제도 자체가 종합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선구매로부터 얻는 혜택과 구매는 그리 체감할 수 없다. 또 법령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에, 현장에 있는 분이 공공구매 관련해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건 포괄적이지 꼭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큰 장벽이 해결되고, 관련한 지침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게 반복되면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뭐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지 역으로 더 나빠질 건 뭐지란 정치허무주의와 같은 반응이 지배적이게 되어 현장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있다.

기본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연대체계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 실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일정정도 이런 법적 근거가 촉진제를 할 것으로 기대되긴 하다.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바뀌었으니 우리도 통합적으로 체계를 갖추자라는 생각이 내용적 연대보다 우선시되거나 연대활동의 방식 또한 소위 말하는 '동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대활동이 잘되는 건 제도의 틀거리도 중요하지만 연대활동 주체들의 몫이 중요하다.

전달체계 통합에 대한 문제는 앞서 여러 부분이 얘기 나와서 간략하게 얘기한다. 취지에는 동감하나 어느 하나는 살리고 어느 하나를 사장시키는 결과로 나오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에 따른 재정적 비용, 사회적 기회비용은 줄어드는 대신에 각 사회적경제 영역의 특성을 잘 담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잃는 게 많을 것이다. 제가 일하는 일과 나눔은 자활이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이기에 발품 많이 팔아야하고 피곤할 때도 있다. 하지만 발품을 많이 팔아서 도움이 된다면 여러 군데 돌아다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회비용과 함께 이런 부분

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자활사업의 경우 다면적이다. 사회적경제활동이면서도 공적부조, 사회복지인프라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면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사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단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경제학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전달체계 또한 그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초안이 새누리당의 법안과 달리 국기법의 개정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럽고, 이 기초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 청중 질문 및 의견

유영우: 토론이 끝났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의 법은 일방적이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의 주도성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드는 과정이 우리사회의 상식처럼 여겨졌다. 가장 중요한 건 법의 목적과 취지가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강조되면 공급자 입장에서 사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 법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도 상식화되어야 한다 생각해본다.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 많이 해주었다. 많은 제안도 구체적으로 해주기도 했다. 두 분 발표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고,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경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있다. 크게 보고, 길게 봐서는 법의 취지에 동의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겪는 상황은 협동조합기본법 조차도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공동육아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곳을 지원하는 법인조직이다. 70개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다.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갈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기재부에서 협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사업자등록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기에 고유번호증만 있다. 그런데 기재부에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인해, 부모어린이집이란 종류가 생겼는데,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이걸 부모만 운영하는 조합이라고 해석하기에 우리처럼 부모-교사-지역인들과 같이 하는 경우는 법적 지위가 인정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충돌이 있다. 다들 이런 문제가 많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막고 있느냐를 정리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본법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김홍길: 한국사회투자에 있다. 김현미 의원 안과 관련한 의견이다. 사회적금융 논의와 관련해 현재 보조금과 사회적금융을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척 상에 기금조성과 금융원을 연동해 놓았는데, 이는 성남시 조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다. 성남시가 20억씩 3년간 60억 출현하도록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5억밖에 출연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왕에 사회적금융을 할 거라면 실질적인 세척에

서 강화해야할 것 같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법안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 기부금형, 리워드 형은 그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경우 연동되는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신탁이나 금융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금감원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LTV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있고 하니 기존 금감원의 규제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신탁 등 금융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손충당금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심사가 대표자의 신용정보 위주인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법인으로서의 심사가 있어야 한다. 지금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펀드 오브 펀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가 여러 공약이 나오는데, 이런 걸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직접적인 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전대하는 방식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 자활의 경우 자활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자활공동체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센터이기에 오히려 자활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영우: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관련해서 얘기하면 저는 사회적금융이라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적금융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금융은 굉장히 광범위한 금융이고, 사회적금융의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걸 기본법에서 축소시켜 정의했다. 사회적금융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야할 영역이다. 아직 사회적금융의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제 막 공부하려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하지 않나란 개인적인 의견이다.

문보경: 자료 28페이지에 나온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얘기가 나와서 해명하고 싶다. 왜 대선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제기 하나란 얘기를 많이 한다. 이는 그 당시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공약을 취합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상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새누리당안, 새정치연합의 자문위원회 성격은 아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또한 한기협에서는 예산권이 동반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처는 아니지만 독립된 기구다. 그 당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고민했던 건 이런 고민이었다. 대선 때 연대회의에서 분명히 요구했는데, 왜 문제제기 하나란 태도는 지향해줬으면 좋겠다. 연대회의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조직인 것처럼 폄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했다.

또 자료집 36페이지 보면 이번 기회에 놓치면 자꾸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안에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길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표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못하면 안될거야 란건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길 하는건지 물어보고 싶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에 있다. 협동조합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을 들까 했는데 얘기해본다. 작년 가을에 대리운전 관련 법안 제정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만들지 말자고 했다. 이유는 안전장치들이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구조를 짜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이냐란 얘기를 하고 싶다. 세력이 미성숙한데,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냐 의문이고, 누가 이 시기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나 궁금하다.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회에 있다. 잘못된 법안이다. 상정되면 폐기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 같다.

○ 발제자 정리

유영우: 법조문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본질적인 의견도 있었다. 발제하신 분들이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얘기해줬으면 한다.

김기태: 제안들은 모두 수용하고, 고민을 해보려 한다. 최영미 대표가 얘기한 다른 법안에서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형태에서 넣지 않고, 다른 법안에 넣는 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협동조합계의 30년의 숙원인데, 안하고 다른데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신탁 측에서 신탁만 법안에 나오는 것으로 한 얘기는 농협법 등도 상호금융전체로서 다 연결되기에 다른 금융협동조합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면 다른 법률도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문보경 집행위원장 얘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라고 본다. 저번 대선에도 나왔기에 시기상조라 얘기하기도 어렵다. 어떤 체계를 만들거나, 어떤 상을 만들거나는 그 다음 이슈다. 얘기했는데 반대하나 그런 논의로 쓴 건 아니고, 다만 1,2단계는 동의되었으니, 이제 3단계를 얘기하자란 측면이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 정말 반대할 부분은 농협, 사회복지법인 측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에 그 뒤로 넘어가면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박보다는 90% 팩트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라면 국회 등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지혜롭고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백현석: 오늘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오늘 느낀 부분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겠다는 점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만들 때도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과연 도움이 되는 법인지, 만들어지고 나면 안 좋을지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다시 고민하겠다.

유영우: 토론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겠다는 과정에서 한 가지 건진 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도 본격화되었다란 점이다. 개념 정의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가 국가적 경제나 실제 가치 실현에 있어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사회적경제를 심도 깊게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정말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급자적인 사고가 아닌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요자 입장이 법안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겠다. 한번에 끝날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끝>